



제337회 임시회  
2015. 1. 28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충청북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월 19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월 20일

### 3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4조)
  - 15명 이내, 임기 2년(한차례 연임 가능), 위원장 행정부지사
  - 기관의 설립·운영 타당성, 경영평가 제외대상 선정, 경영진단 제외 대상 대상기관 선정, 임원의 해임 또는 해임요구 등 심의·의결
-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(안 제6조)
  - 도지사는 기관의 장과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 성과계약,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 성과계약서 작성 및 6월까지 평가
- 경영평가단 구성 및 경영평가 실시 등(안 제10조 ~ 제14조)
  -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 구성·운영 가능
  - 출자·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, 경영성과, 성과계약 등 평가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제정·시행('14. 9. 25.)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-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체계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행자부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제안되었음.
- 안 제4조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‘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’의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, 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‘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 위촉’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음.
  - ※ 양성평등기본법(시행 2015. 7. 1) 제21조 제2항: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.
-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임원 해임 및 해임 요구 시 해당 임원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과 임원 대상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한 출자·출연기관 장의 보고의무를 규정함.
-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
  - 도지사의 출자·출연기관의 장 신규 임명 후 1개월 내 성과계약 체결 의무와 매년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의 보수반영 등을 규정하였고,
  - 출자·출연기관의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, 지도감독 권한 및 해산 사유에 대해 규정함.
- 안 제10조부터 제17조는 경영실적·진단 평가계획 수립, 경영평가단 구성·운영,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, 경영실적 평가 및 진단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자부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고, 일부 조항에 충북 특성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법리적, 내용적 문제는 없음.

- 단,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평가단의 구성원 조건 중, 제1항제3호의 공무원의 경우, 행자부 표준조례안에서도 ‘출자·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’으로 명시하고 있는데, 본 조례안에서는 ‘출자·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’으로 변경,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  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, 인용 제명 표기 및 약칭 적용 등에 따라 조례안의 다음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  - 1) 안 제1조,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4항, 제6항의 인용된 법령제명에 낫표(「」) 표시
  - 2) 안 제4조제2항, 제6항 ‘위원회’ → ‘심의위원회’
  - 3) 안 제4조제4항 ‘해촉’ → ‘위촉 해제’
  - 4) 안 제4조제6항 ‘조례가 정하는’ → ‘조례에서 정하는’
  - 5) 안 제10조 항 번호 중 두 번째 3항을 4항으로, 4항을 5항으로 수정

참조

도 출자·출연기관 현황

(2015. 1월 현재)

법 인 명	대표자 (CEO)	임기 (년)	기 간	기관 설립근거	설립 일	정원 (명)	현원 (명)	주요기능	비고 (주관 부서)
계				13개 기관		1,175	1,056		
충북발전연구원	정초시	2	'14.9.1 - '16.8.30	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	1990.05.15	39	27	도정발전 중장기 개발계획 및 현안사항 조사연구	정책 기획관
충북인재양성재단	도지사	-	-	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	2008.02.20	5	5	장학사업, 미래 지도자양성 영재교육지원	정책 기획관
충북학사	김지학	2	'14.8.18 - '16.8.17	충청북도 학사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	1991.12.11	38	35	충북출신대학생 종합지원	정책 기획관
충북신용보증재단	이인수	2	'15.1.1. - '16.12.31	지역신용보증재단법	1999.03.26	31	30	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	경제 정책과
충청북도 지방기업진흥원	김정선	2	'13.10.28 - '15.10.27	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	1997.09.04.	19	18	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 지원	일자리 기업과
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	신필수	2	'15.1.5 - '17.1.4	재단법인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03.07.29	32	28	지식산업 및 SW산업 육성 지원	전략 산업과
충북테크노파크	남창현	3	'13.10.5 - '16.10.4	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	2003.12.24	115	93	지역전략사업 발전전략 수립,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, 인력양성 등	전략 산업과
(재)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	장준식	3	'14.11.19 - '17.11.18	재단법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05.11.15	30	18	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	문화 예술과
(재)충북문화재단	도지사	-	-	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민법제32조, 문화예술진흥법제4조	2011.11.30	12	12	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	문화 예술과
청주의료원	손병관	3	'14. 9. 1 - '17. 8.31	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	1983.07.01	454	411	지역의료 서비스	보건 정책과
충주의료원	배규룡	3	'13.8.24 - '16.8.23	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	1983.07.01	326	308	지역의료 서비스	보건 정책과
충북개발공사	계용준	3	'14.9.15 - '17.9.14	공기업법 충북개발공사 조례	2006.01.16	62	59	주택 및 토지 공급 등 공영개발사업	예산 담당관
충북교통연수원	최현태	3	'13.11.1 - '16.10.31	자동차 운수사업법	1986.10.24	12	12	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 교육	교통 물류과